

의안번호	제 257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월 일 (제305회)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출연월일	2011년 11월 30일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11년 11월 30일

제출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중 제4조 보조금 지급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배되어,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되,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조 ~ 제6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관련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 여부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목 “구성 및”을 “구성과”로 하고, 제1항 중 “전임의원 및”을 “전임의원과”로 한다.

제3조 중 “각 호의”를 “각 호 모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선과제 및”을 “개선과제와”로, 같은 조 제3호 중 “연구 및”을 “연구와”로,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위 각 호에”를 “그 밖의 위 각 호 모두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충청북도지사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중 “조례 및”을 “조례와”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 중 “법령 및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법령과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 -----<u>전임의원 및</u>-----.</p> <p>제3조(사업) ----- -----<u>각 호의</u>-----.</p> <p>1. -----<u>개선과제 및</u>----- 2. (생략) 3. -----<u>연구 및</u>----- 4. <u>기타 위 각 호에</u>-----</p> <p>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u>충청북도는</u> <u>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u> <u>할 수 있다.</u></p> <p>제5조(운영규정) -----<u>조례 및</u>----- -----<u>범위 안에서</u>-----.</p> <p>제6조(준용) ----- <u>법령 및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u> -----.</p>	<p>제2조(구성과 설립운영) ① ----- -----<u>전임의원과</u>-----.</p> <p>제3조(사업) ----- <u>각 호 모두의</u>-----.</p> <p>1. -----<u>개선과제와</u>----- 2. (현행과 같음) 3. -----<u>연구와</u>----- 4. <u>그 밖의 위 각 호 모두에</u>-----</p> <p>제4조(보조금의 지원) <u>충청북도지사</u> <u>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u> <u>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충</u> <u>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u> <u>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u></p> <p>제5조(운영규정) -----<u>조례와</u>----- -----<u>범위에서</u>-----.</p> <p>제6조(준용) ----- <u>법령과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u> -----.</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사회단체보조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 통계목에 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된 경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